

학교폭력법에 의한 징계절차에 관한 연구

-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Process of School Violence Act

- focusing on Educational Approach on perpetrator -

이동명* · 김후년**

Lee, Dong-Myung · Kim, Hoo-Nyun

목 차

- I. 서론
- II. 학교폭력의 개념
- III. 학교폭력사건의 징계 절차
- IV. 학교폭력사건 징계절차의 문제점과 교육적 고려
- V. 결론

국문초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학교폭력법'이라고 한다)이 2004년 제정·시행된 이후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법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학교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교육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논문접수일 : 2012.06.28

심사완료일 : 2012.07.25

게재확정일 : 2012.08.02

* 법학박사 · 호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교육학박사과정 · 대진대학교 대학원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남겨 개인의 삶과 학교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서 인권과 적정절차를 기본으로 한 교육적인 고려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교육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이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보호 받아야 하는 학생이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법이나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을 징계할 때에는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징계절차에서 가해학생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입장에서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비록 가해학생이지만 인격을 고려한 적절한 조사와 징계가 이루어 졌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피해학생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교육의 장이다. 학생징계절차의 민주화와 투명성 보장은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과 교육제도의 수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 학교폭력, 학교폭력법, 사법절차, 징계절차, 교육적 접근

I. 서 론

학교폭력(school violence)은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발적이거나 지나친 장난 또는 일시적인 일탈행동으로 여겨져 왔고, 이해당사자들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안이하게 대처하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양상이 흉포화·교묘화·저연령화하는 한편 다수의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고통함을 당한 학생이 자살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¹⁾

이러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고, 1990년대 중

반부터는 학교폭력에 대해 민간단체들의 조직적인 대응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1997년 「청소년보호법」을 제정·시행하였고,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에서는 '학교폭력법'이라고 한다)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2005년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이러한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당사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폭력에 대처할 때 교육적인 차원을 고려하도록 하여, 다른 폭력사건과는 다르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²⁾ 그리고 학교폭력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지만 은폐되었던 학교폭력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었다.

그러나 학교폭력법의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학교폭력법의 미비점에 대해 문제 제기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수차례 걸쳐 개정 작업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³⁾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학교의 자체적인 조사와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장에 의한 징계와 형사사법기관의 처분과 함께 민사소송이 이어지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법에 의한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와 징계 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교육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문용린 · 이승수, 「학교폭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0, 1면.

2) 학교폭력법은 그 제정이유에 대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 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같은 법 제정이유 참조).

3)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법교육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2010. 6, 71면.

II.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학교内外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폭력을 말하지만,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중의 일부만을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학교폭력'은 '학교'와 '폭력'이라는 용어의 결합이다.⁵⁾ 여기에서 '학교'는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공간적 장소를 의미하는데,⁶⁾ 일정한 거리가 어느 정도의 근접성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반면 '폭력'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력을 의미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힘의 부당한 사용도 폭력의 의미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폭력의 외연은 단순한 물리력의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

학교폭력은 1978년 Olweus의 저술⁷⁾이 발표된 이후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 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에게 책임이 크다'는 기준의 인식에서 벗어나 범죄의 한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⁸⁾

그리고 오늘날 학교폭력은 그 위험성과 심각성 때문에 청소년문제 영역에서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4) 이석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여가의 뉴 프레임 : 학교스포츠클럽",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2012, 31면.

5) 김창균·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제38집, 한국법학회, 2010, 5, 175~176면.

6) 교육기관에서는 '학교주변폭력'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으며, 교육기관과 검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역시 학교주변의 불량배 단속에 주안점을 둔다는 것은 학교주변 폭력의 개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창균·임계령, 위의논문, 175면 주1) 참조).

7) Dan Olweus, *Aggression in the Schools : Bullies and Whipping Boys*, John Wiley & Sons Inc., 1978.

8)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 방안", 「2005년 청소년상담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11면.

1.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성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하지만, 학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폭력의 발생 비율, 피해와 가해의 원인 등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⁹⁾

가.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에 대해 정의할 때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와 폭력의 주체 그리고 학교 폭력에 포함되는 행위 내용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기준이다. 학교폭력 개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¹⁰⁾

첫째,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학교폭력이 청소년폭력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교주변과 등·하교 길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한정시키기도 한다.¹¹⁾

둘째, 학교폭력의 주체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이다. 우리나라보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학생의 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¹²⁾ 우리나라에서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

9) 임영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1998, 3면.

10)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241~243면 참조.

11) Astor, R. A. Behre, W. J. Fravil, K. & Wallace, J. M.,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1997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Vol. 42 No. 1, pp. 55~68.

12) Michael, F. Leslie, B. Scott, P. Jessica, M. & Sharon, B.,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psychologists perceptions of campus viol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33(1), 1996, pp. 28~37.

구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를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셋째, 폭력의 개념 정의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폭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히기 위한 물리력의 행사”¹³⁾라고 정의되지만,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동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¹⁴⁾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¹⁵⁾ 사이버 따돌림,¹⁶⁾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나. 학교폭력의 특성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는 불안한 시기이며,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와 성인기로의 생활 확대에 따른 적응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고 극심한 감정 변화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사고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¹⁷⁾

- 13) Archer, J. & Browne, K., *Human Aggression :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1989, pp. 10~11.
- 1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 15)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
- 16)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의3호).

학교폭력은 어느 정도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다음과 같은 일 반적인 특징을 지닌다.¹⁸⁾

첫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폭력이 행사될 수 있어 피해학생은 항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둘째, 일반적인 폭력은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지만, 학교폭력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피하려고 하여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셋째, 피해학생의 행동과 관계없이 가해학생의 의도나 기분에 따라 폭력이 행사되는 경향이 많다. 넷째,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폭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다섯째, 예측불가능하고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는 상당히 심각한 폭력에 장기간 시달리게 되면 폭력에 둔감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 병리학적인 이상증세를 수반하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2. 학교폭력의 실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였다.¹⁹⁾

가. 학교폭력의 일반적 실태

무엇이 학교폭력인가에 대하여 학생들은 '땡셔틀'(54%), '졸업땡'(64.3%), '홈피욕설과 악성댓글을 다는 것'(65.1%),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것'(79.3%),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하는 것'(69.1%) 등이라고 답하여 어떤 것이 학교폭력인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 김창군·임계령, 앞의 논문, 177면.

18) 정희태, "학교폭력 예방과 갈등해결 방안 : 인성 교육적 접근", 「윤리연구」, 제83집, 한국윤리학회, 2011, 133면 참조.

19) 청예단, 「201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본」, 청예단, 2012, 11~18면 참조.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심각하다'(38.1%)가 '심각하지 않다'(18.1%)보다 많았으며, 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는 '신체폭행'(25.8%), '집단 따돌림'(21.2%), '괴롭힘'(21.7%), '금품 갈취'(12.9%), '언어폭력'(8.6%), '위협이나 협박'(3.3%), '성적인 추행'(3.2%), '인터넷이나 휴대폰 욕설, 협박, 동영상 촬영 피해'(1.7%)의 순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다.

학교폭력은 '장난'(40.2%), '이유 없음'(23.1%), '오해와 갈등'(12.2%)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매체²⁰⁾가 학교폭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53.7%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씨클의 존재에 대해서는 '없다'(31.2%)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16.5%) 보다 많았다.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알린다'(39.1%), '경찰서에 신고한다'(12.4%), '함께 싸운다'와 '학교폭력 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상담한다'(11.5%), '친구와 방법을 의논한다'(7.8%), '말로 하지 말라고 한다'(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 학교폭력의 가해 실태

재학기간 동안 가해 경험에 대해 응답자의 20.9%가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57.3%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초등학교 4~6학년때(26.9%)와 중학교 1학년때(11.6%)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초등학교 4~6학년때(41.0%)와, 중학교 1학년때(9.7%)가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가해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1.4%로 나타났으며, 가해 경험이 1회(8.1%) 보다 2회 이상(20.9%)이 높게 나타났다. 가해 방법으로는 '때렸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했다', '말이나 협박이나 위협을 하였다'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 이유는 '장난', '상대학생이 잘못해서', '오해와 갈등' 순으로 분석되었는

20) 영상매체는 폭력영화, 인터넷, 게임, 애니메이션 등을 예시하였다.

데, 남학생은 '장난'(30.9%), '상대학생이 잘못해서'(22.3%)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상대학생이 잘못해서'(23.4%), '오해와 갈등'(19.8%)이 높게 나타났다.

가해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피해학생에게 사과하고 일이 좋게 해결되었다', '담임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 경험은 있었지만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가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질문을 한 결과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 '담임선생님이 아셔서 꾸지람을 들었다', '학년이 올라갔거나 졸업 등 환경이 바뀌었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피해학생 부모님이 연락을 해서 꾸지람을 들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생각이 변했다' 등도 나타났다.

다. 학교폭력의 피해 실태

재학기간 중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22.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에서 53.5%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22.7%로 나타났으며, 피해 기간은 '하루~2주미만' 등 단기간이 가장 많았지만(56.1%), '3개월 이상' 피해도 29.9%로 나타났으며, '처음 피해준 사람이 계속 피해줌'(44.0%), '처음 피해준 사람이 친한 주위사람'(33.4%)이 가해학생으로 나타났고, '같은 반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학교 교실, 복도, 화장실 등 '교내'(75.2%)의 비중이 높으며, 피해를 당하는 시간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수업시간 등 '교내'(68.8%)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맞았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말로 협박이나 위협을 당했다'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은 '맞았다'(48.3%)와 '돈이나 물건 갈취'(10.7%)가 높은 반면, 여학생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33.6%)과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18.1%)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416명 중 60.8%가 '고통스러웠다'고 하였고, 그 중 13.9%는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은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23.3%), '많이 고통스러웠다'(20.7%)로 응답하여 남학생(10.4%, 19.7%)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등교거부 충동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47.8%)를 제외하고 1년에 최소한 1번 있다가 52.1%로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전에 학교폭력을 당했지만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을 극복한 방법을 물어본 결과 '부모님 도움', '담임선생님께 도움 요청', '생활지도부 선생님과 자치위원회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혼자 힘으로 해결했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III. 학교폭력 사건 징계 절차

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형사법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미성년자이고, 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법을 무조건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법에 따라 징계하거나, 일반 형사법을 적용하는 대신 소년법을 적용하게 된다.

1. 학교폭력법의 특징

소년법은 형벌보다는 다른 처분들로 형벌을 대신하려고 하고, 이런 맥락은 학교폭력법에도 적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법은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이외에 피해자에 대한 조치도 교육적인 입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법기관에 의한 절차와 학교폭력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의한 절차가 중복하여 진행되는데 이러한 처리

과정은 사법절차와 교육절차의 목적과 효과가 서로 다른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혼동하여 중복되는 절차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¹⁾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무조건적인 교육적 접근도, 무조건적인 사법적 접근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여야 하고, 그 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²²⁾

2. 학교폭력 사건의 신고

학교폭력법 제20조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같은 제2항),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제3항).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 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 이러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3. 징계절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에서는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징계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통보한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가. 조사기관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21) 김현철, 앞의 논문, 74면.

22)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교육법 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교육법학회, 2008, 27~34면 참조.

사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자치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과 가해학생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기구는 교육감이다(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²³⁾ 그리고 교육감은 이러한 조사·상담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법 같은 조 제2항).²⁴⁾ 그러나 특정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권한은 전문상담교사와 보건교사 그리고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로 구성된 전담기구(이하에서는 '전담기구'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다. 즉, 학교의 장은 학교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두어(같은 법 제14조 제1항),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그리고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자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같은 제3항),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제4항).

나. 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리고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학교폭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이러한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²⁵⁾

23)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의 이행 지도, 관할 구역 학교폭력서를 단속,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민간 기관 및 업소 출입·검사, 그 밖에 학교폭력 등과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학교폭력법 제11조의2 제1항 참조).

24)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학교폭력법 제13조 제1항).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①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학교에서의 봉사, ④ 사회봉사, 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⑥ 출석정지, ⑦ 학급교체, ⑧ 전학, ⑨ 퇴학처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²⁶⁾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5항)고 하고 있다.

다. 학교의 장의 조치

자치위원회의 기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조치를 하여야 한다(학교폭력법 제17조 제6항). 다만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으며,²⁷⁾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같은 제4항).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같은 제7항).

25) 김현철, 앞의 논문, 78면.

26)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학교폭력법 제17조 제1항 단서).

27) 이 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와 출석정지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징계에 대해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고 하고, 학생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IV. 학교폭력 사건 징계절차의 문제점과 교육적 고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이 고유한 가치의 주체로서 인정되는 존귀함을 갖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이하에서는 ‘협약’이라 한다)이 1989년 11월 2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 발효되면서 전 세계의 18세 이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국제인권규약의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아동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의견 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의 인권과 권리 확보를 위한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9월 25일 이 협약에 서명하였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고, 1991년 12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유권, 복지권, 평등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²⁸⁾ 이

28) 학생의 경우 자유권에는 학생의 존엄과 의사존중, 학생자치와 참여권,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이 포함된다. 복지권에는 교육에 대한 권리, 건강권, 안전권, 휴식과 문화에 대한 권리, 적법절차를 누릴 권리,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권리, 권리를 지킬 권리 등이 포함된다. 평등권에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존엄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한다(표시열,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 : 체벌·징계절차·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

러한 내용 중에서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모습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가이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법과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에 대해 징계할 때 적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때, 예를 들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학부모의 동석 여부, 자치위원회 출석 요구에 대한 방식과 절차, 피해학생 또는 그 학부모와의 분쟁 조정 절차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1. 학생자치권

협약 제12조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같은 제1항)고 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같은 제2항)고 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의4)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학생의 인권은 학교에서의 생활과정에서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²⁹⁾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를 할 때에는 협약, 헌법에 따른 기본권, 교육관계법령 보다는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이 실질적인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가. 문제점

학생생활규정은 비민주적인 규정이 많고, 학생의 의견이 올바로 반영되지

구」, 제20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8, 155면 주 9) 참조).

29) 표시열, 앞의 논문, 162면.

않으며, 용어와 규정내용이 모호한 것이 많고, 유사한 비행에 대한 징계도 학교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³⁰⁾

교육기본법은 제5조 제2항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으로 결정(같은 법 제17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1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만 구성한다고 하여 학생을 배제시키고 있다.³¹⁾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이 학교장의 행정업무에 관여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으며,³²⁾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과정에서 ①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②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③ 학칙개정절차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지만(초·중등 교육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학생들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생자치활동이 제한될 수 있어 학교운영에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³³⁾

나. 개선방안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에 대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존중이며, 자율성에 대한 접근이어야 한다.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교육한다는 차세로 학생의 의

30) 박재윤, “학생징계제도와 운영실태”, 「교육법학연구」, 제9호, 대한교육법학회, 1997, 83~84면.

31) 김용화,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완”, 국가인권위원회·아동권리학회, 「2012 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 아동권리학회, 2012, 140면 주 50) 참조.

3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제20집, 대한변호사협회, 2005, 317면 참조.

33) 김용화, 앞의 논문, 141면.

견을 학칙 등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서 경청하여야 한다. 생활규정의 제·개정에서 학생의 참여, 규정의 공지 등이 인권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³⁴⁾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히, 학생에 대한 포상과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은 물론 이들에 대한 제정과 개정 내용에 대한 공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2. 사건 조사 절차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빈발하는 문제로 학교는 물론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있으며, 학교 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 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협약의 기본원리인 아동의 생명·생존·발달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³⁵⁾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같은 제2항)고 하여 적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 문제점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조사와 상담 권

34)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6, 210~213면 참조.

35) 협약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 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은 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³⁶⁾ 특정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전담기구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와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같은 법 제14조 제3항) 학교의 장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는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징계에 대한 기준이 되고 있는 학칙은 학교마다 그 규정이 다르고, 동일한 학칙에 대해서도 교사마다 그 적용기준이 달라 교육적 목적에 따른 징계를 어디까지 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³⁷⁾

그리고 전담기구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243조의2 제1항),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같은 법 제244조의5 제1항 제1호). 그런데 학생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가해학생의 인권을 고려한 적정한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은 물론 학교폭력법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나. 개선방안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각종의 조치는 사건에 대한 조사와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이나 학교폭력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징계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보다는 그 기초가 되는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충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것이다.

36)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의 조사와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

37) 김대유, “학생 징계절차 확립과 학생 참여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0, 36면.

현실적으로 특정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 또는 전담기구가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전담기구에서 가해학생을 조사하더라도 전담기구 구성원 2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답변을 강요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 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 과정에 학부모 또는 성년의 형제자매가 참여하도록 하여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학교폭력 사건 조사와 관련된 절차 등에 관하여 법령에 보다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거나, 표준지침을 배포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³⁸⁾

3. 징계 절차

학교폭력법은 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그리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고 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과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

38) 김현철, 앞의 논문, 78면.

일 이내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학교폭력법 제17조의2 제2항). 한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학교폭력법 제17조의2 제6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2항, 제4항).

가. 문제점

학교폭력법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논의하는 자치위원회 회의에 앞서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 제척 대상이 있는지를 살필 기회가 있어야 하고, 의견진술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학교폭력법은 자치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당사자인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 대해 회의 개최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충분하게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면 1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과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인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고자 하거나, 가해학생의 입장에서 보다 가벼운 조치를 받기 위하여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와의 화해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비밀을 준수³⁹⁾하여야 할 것인가

39)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고 하면서,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의 문제이다.

나. 개선방안

우리 형사소송법은 제266조에서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副本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자치위원회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 자치위원 명단 등 최소한의 정보가 문서로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에게 통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폭력법은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할 때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④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그리고 그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후문).

생각건대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적 입장에서 본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고,⁴⁰⁾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가해학생의 사과와 피해학생의 용서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심의 이전에 자치위원회 내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상담교사의 상담 결과를 참고로 하여 조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

사항(같은 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같은 법 제21조 제3항), 피해 학생·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제3항 단서)고 하고 있다.

40) Shaw, Margaret, *Comprehensive Approaches to School Safety and Security: An International View*, International Center for Prevention of Crime, 2004, pp. 91~107.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행정에서 적법절차의 적용은 그 동안 학교행정에서 교사가 행사하여 왔던 재량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⁴¹⁾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학교폭력은 과거부터 항상 발생해 왔지만, 1980년대 후반 이전에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던 문제였지만 최근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더 받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살 등 학교폭력에 대한 매스컴의 관심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언론과 사회, 정부의 과잉반응을 불러일으켜 때로는 현실 문제를 왜곡하고 이벤트성 대책을 놓기도 한다.⁴²⁾

요즈음 학생들은 자신의 어떠한 행위에 대한 책임보다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무와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경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행동이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사소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 교육적인 차원에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폭력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고, 사회의 도덕화, 가정의 정상화, 구성원의 인격화를 통해서만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축은 결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학교폭력을 비롯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학생과의 분리와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피해학생의 진술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³⁾

41) 표시열, 앞의 논문, 163면.

42) 장미란, 「OECD국가 학교폭력 현황 및 대응 방안」, 외교통상부, 2012. 4. 12, 2면.

다른 한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와 징계 절차에서 가해학생의 진술 또한 징계 조치의 범위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가해학생들이 심정적으로 안정을 취하고 가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폭력법이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은 가해학생이거나 피해학생이거나를 불문하고 법률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가해사실을 확인하는 조사 과정이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징계 절차에서 아직은 미성년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인권보장적인 접근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중고등학생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6.
- 김대유, "학생 징계절차 확립과 학생 참여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10.
-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정 방안", 「교육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교육법학회, 2008.
- 김용화, "아동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완", 국가인권위원회·아동 권리학회, 「2012 아동권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아동권리존중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행방안」, 아동권리학회, 2012.
- 김준호 외,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3.
- 김창군·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제38집, 한국 법학회, 2010. 5.
-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법 교육연구」 제5권 제1호, 한국법교육학회, 2010. 6.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제20집, 대한변호사협회, 2005.

43) 김용화, 앞의 논문, 146면.

- 문용린·이승수, 「학교폭력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2010.
- 박재윤, "학생징계제도와 운영실태", 「교육법학연구」 제9호, 대한교육법학회, 1997.
- 이석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여가의 뉴 프레임 : 학교스포츠클럽",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학술세미나자료집」,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 2012.
- 임영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1998.
- 장미란, 「OECD국가 학교폭력 현황 및 대응 방안」, 외교통상부, 2012. 4. 12.
- 정희태, "학교폭력 예방과 갈등해결 방안 : 인성 교육적 접근", 「윤리연구」 제83집, 한국윤리학회, 2011.
- 청예단, 「201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요약본」, 청예단, 2012.
- 표시열, "한국 학교에서 아동권리협약의 적용과 과제 : 체벌·징계절차·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제20권 제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8.
- 한국청소년상담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 방안", 「2005년 청소년상담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Archer, J. & Browne, K.,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1989.
- Astor, R. A. Behre, W. J. Fravil, K. & Wallace, J. M.,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1997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Vol. 42 No. 1, 1997.
- Margaret Shaw, *Comprehensive Approaches to School Safety and Security : An International View*, International Center for Prevention of Crime, 2004.
- Michael. F. Leslie, B. Scott, P. Jessica, M. & Sharon, B.,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psychologists perceptions of campus violence, *Psychology in the Schools*, 33(1), 1996.

[Abstract]

A Study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Process of
School Violence Act
- focusing on Educational Approach on perpetrator -

Lee, Dong-Myung

Professor, Dept. of Law, Honam University

Kim, Hoo-Nyun

Completion of doctorate, Daejin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is enacted and implemented since 2004, large and small revisions have been made. But still, School Violence Act in the field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occurs when the appropriate legislation in education about whether the deal has raised many questions.

The student who committed the acts of school violence and damage to both mental and physical irreversible scarring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school community is to destroy the anti-social crime. Nevertheless, this study of school violence and disciplinary procedures applied in the investigation of student rights and due process considerations based on the claim is an education.

The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but still being educated in the minors, and the other perspective, because the students still need to be protected. Considering the character was made to the appropriate investig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until the time and reflect on their actions with the victim will be able to seek forgiveness for students is determined.

School is a place of education. First and foremost the democratization and

the guaranty of transparency in student disciplinary process should be based on the establishment of correct education and education system.

Key words :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 judicial procedure, disciplinary punishment process, educational procedure